

의안번호	제 433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8월 19일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33
----------	-----

제출연월일 : 2016년 8월 1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아동복지법」 제48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16.12.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17. 1. 1 ~ '19. 12. 31)
 - 위 치 : 충청북도 소재
 - 수탁기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
※ 現 수탁기관 : (사복)어린이재단 (관장 최명옥, '15. 11. 16 ~ '16.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349백만원(도비 100%)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정보 제공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 ※ 단, 위탁 전 관련조례 개정의 경우 위·수탁협약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3. 참고사항

가. 現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센터 설립 경과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15.11.16)
 -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공모 없이 위탁 지정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위·수탁 기간 : '15. 11. 16 ~ '18. 10. 1 * 도 조례제정('15.10.2)
 -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핵심사업위주 재편을 위해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를 위탁기간 만료 전 폐지('16. 12. 31.)
- 사업비 : 349백만원(도비 100%)
- 기관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5(프뢰벨빌딩 3층)
- 주요업무 : 가정위탁 홍보, 위탁가정 발굴, 사례관리, 정보 제공 등
- 조직·인력 : 10명(관장1, 상담원8, 심리치료전담인력1, 사무원1)

나. 관계법령 : 별첨

-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 건 복 지 국
복 지 정 책 과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예정('16.12.31.)됨에 따라 가정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기관을 선정,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 / 민간위탁(3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9조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17. 1. 1. ~ '19. 12. 31.(3년)
- 위탁범위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위탁사업비 : 349백만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사무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정보 제공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 現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관장 최명옥, '15. 11. 16 ~ '16. 12. 31.)

□ 추진절차

① 의회동의	· 추진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의회동의	'16. 8월
② 수탁공고	· 수탁기관 공고 - 방법 : 공개모집(15일 공고) - 자격 :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요건 갖춘 자	'16. 10월
③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최고 득점자 선정	'16. 11월
④ 협약체결	· 협약체결 및 공증	'16. 12월

① 의회동의

- 동의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 4조 제3항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③ >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동의시기 : 8월 임시회기중

② 수탁공고

- 공고기간 : '16. 10월 (15일간)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사·결정 (고득점자 선정)
- 신청자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 ② >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나. 별표 8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 다. 별표 10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수탁조건

- 관계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 사업공간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의 수탁기관 부담
- 현직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

③ 수탁심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16. 11월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규칙 준용
- 구성인원 : 6~9명정도(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협력 등
 - ※ 기타 필수조건 확인(보건복지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기준)
- 계획설명 : 공모기관별 각 20분 이내
- 수탁자 선정 : 최고 득점기관 수탁관리자 선정, 수탁신청기관이 2개미만이거나 협약대상자 협약결렬시 재공모

④ 협약체결

- 체결 시기 : '16. 12월
- 내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계·인수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6. 8월

- 수탁기관 선정공고 : '16. 10월 (15일간)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6. 11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6.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17. 1. 1.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별표 8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추 것

다. 별표 10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추 것

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체결)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정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턴 3년간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